

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(경미한) 변경인가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11-058호(2011.03.16.), 경기도 고시 제2013-416호(2014.01.06.), 광명시 고시 제2018-126호(2018.08.24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·고시되고 광명시 고시 제2020-44호(2020. 3. 27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광명시 고시 제2023-218호(2023. 12. 28.)호 사업시행계획인가 1차 변경 및 광명시 고시 제2025-242호(2025. 9. 11.)호 사업시행계획인가 2차 변경 고시된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1일
광 명 시 장
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(변경없음)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 - 가. 위 치 :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-267번지 일원
 - 나. 면 적 : 98,208.8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
 - 가. 성 명 :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호남)
 - 나. 주 소 :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1 신안오피스빌딩 905호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 (변경없음)
- 5. 사업시행인가일 : 2020년 3월 27일 (변경없음)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(변경없음)
- 7. 건축물의 대지 면적, 건폐율, 높이,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(변경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대지면적	77,056.70㎡	좌 동	—
건축면적	14,792.29㎡	좌 동	—
건 폐 율	19.20%	좌 동	—
연 면 적	341,953.59㎡	좌 동	—
용 적 율	248.59%	좌 동	—
층 수	지하7층~지상29층	좌 동	—

세 대 수	2,045세대	좌 동	—
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 복리 시설		—

※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 주요 변경내용)

- 단지별 정화조를 PIT층으로 변경하고, 정화조관리층은 창고로 변경(면적변경 없음)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(변경없음)

공급구분	주택의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세대수 (전용면적기준)		비고
계	—	19	2,045	평형 (㎡)	2,045	—
분양	아파트	19	1,942	39.97(39형)	14	—
				49.88(49형)	125	—
				59.98(59A형)	592	—
				59.78(59B형)	226	—
				74.77(74A형)	357	—
				74.78(74B형)	85	—
				74.84(74C형)	58	—
				84.89(84A형)	140	—
				84.73(84B형)	220	—
				84.63(84C형)	65	—
				99.68(99형)	55	—
				130.73(130A형)	2	—
				130.55(130B형)	3	—
임대			103	39.97(39형)	103	—

9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10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의제처리 (변경)

- 가.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
- 나.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